

예 산 총 칙

200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,365,554,757	130,966,643
일반회계	3,923,104,312	117,693,129
특별회계	442,450,445	13,273,513
기타특별회계	442,450,445	13,273,513
대학운영특별회계	7,808,329	234,250
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	103,445	3,103
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	376,194,036	11,285,821
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	14,410,000	432,300
농어촌진흥기금특별회계	43,018,000	1,290,540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916,635	27,499

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"세입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"채무부담행위조서" 와 같다.

제 4 조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2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"계속비 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,329,600천원으로 한다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있다.